

의안번호	2209613
의 퇴 인	김태선 의원
회 답 일	2025. 4. 15.
추계번호	25F2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기한 2년 연장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50%에서 80%로 30%p 인상하고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7.1억원, 2027년 7.1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14.2억원(연평균 7.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27조제1항)의 경우 과거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개정안에 따라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
 - 해당 규정에 따라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27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누적	연평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27조제1항)		미첨부	1호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율 인상(안 제27조제2항)	-7.1	-7.1	-14.2	-7.1
합 계	-7.1	-7.1	-14.2	-7.1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제1항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2	안 제27조제2항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 인상 - 감면율: (현행)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60%) → (개정안) 80% - 적용기한: 2027.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7조제1항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X	○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안 제27조제2항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안 제27조제1항) 최근연도 감면실적이 없음을 감안할 때, 근로복지공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세수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
- (안 제27조제2항) 현행의 감면율(50%,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60%)이 유지될 경우 향후 지방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19~2023년) 감면실적의 연평균 감면액 4.4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감면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
 - 특이치인 2021년 감면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연평균 감면액
 - 2022년 이후부터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차등화된 감면율이 적용되었으나, 해당 실적은 감면율 50%가 적용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따라서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감면실적이 포함됨을 고려할 때 동 비용추계는 과다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27조제1항)

- (제도개요) 근로복지공단이 공단의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율: (~2020년) 취득세 및 재산세의 25% → (2021년 이후) 취득세의 25%
- (추계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최근 5년 평균 100만원 미만이며 2022년 이후에는 감면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

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표 15]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감면실적	0.007	0.0001	0.001	0	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나.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인상(안 제27조제2항)

(1) 제도개요

□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
 - － 단,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60% 감면
- 감면율: (~2020년) 취득세 75%, 재산세 50% → (20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2022년 이후) 취득세 및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 적용기한: 2027. 12. 31.

□ 개정안은 현행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60%)에서 80%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소가 예상됨

(2) 감면실적

□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은 0.33억원~4.95억원으로 수준으로 그 증감 추이가 일정하지 않음

[표 4]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2019~2023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4.95	4.95	0.33	4.18	3.61
취득세	0.27	0.02	0	0.30	0.02
재산세	4.7	4.9	0.3	3.9	3.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3) 추계방법

- 현행의 감면율(50%,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60%)이 유지될 경우 향후 지방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19~2023년) 감면실적의 연평균 감면액 4.4억원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
 - 특이치인 2021년 감면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연평균 감면액
 - 2022년 이후부터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차등화된 감면율이 적용되었으나, 해당 실적은 감면율 50%가 적용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따라서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감면실적이 포함됨을 고려할 때 동 비용추계는 과다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연평균 감면액 4.4억원이 감면율 50%를 적용한 수치이므로, 이를 토대로 감면율 80% 적용시 예상되는 감면액을 계산한 후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 세수효과를 추정함

[표 4]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인상의 세수효과

(단위: 억원)

감면율		감면액
현행(A)	50%	4.4
개정안(B)	80%	7.1

(4)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50%에서 80%로 30%p 인상하고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는 2026년 7.1억원, 2027년

7.1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7.1억원(연평균 14.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27년, 취득세 및 재산세
(단위: 억원)

	2026	2027	누적	연평균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율 인상(안 제27조제2항)	-7.1	-7.1	-14.2	-7.1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